

「보증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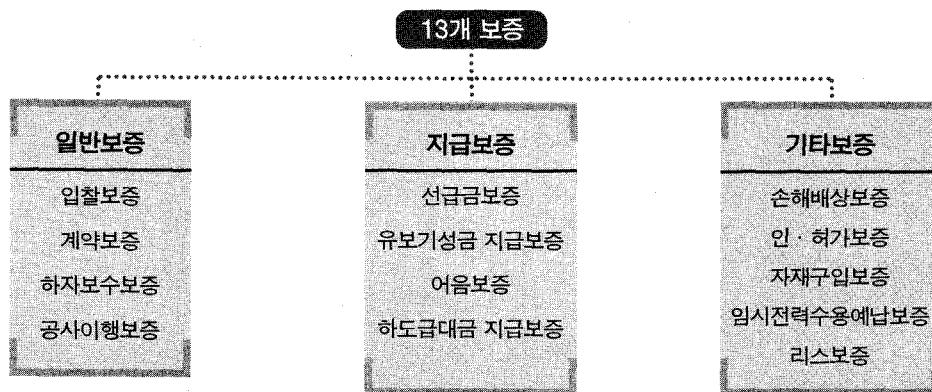


이석기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업무부 과장

우리 조합은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각종 보증업무를 매우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조합과 거래하는 조합원사의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등 아직도 조합업무 이용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보증서신청 및 발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호에는 보증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의 종류와 내용

가. 보증의 종류



나. 보증내용

(1) 입찰보증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4) 공사이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

※ 현재 미시행

(5) 선급금보증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6)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 등의 기성금을 받는 때에 유보하게 되어 있는 일부 기성금을 모두 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7) 어음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어음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8)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9) 손해배상보증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10) 인·허가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11) 자재구입보증

조합원이 시공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자재구입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12) 임시전력수용 예납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13) 리스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시설·기계 및 기구

등을 대여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2. 보증대상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
-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라.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3. 거래방법

가. 입보거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조합과 업무거래 하는 것을 말하며, “비조합원 입보거래”는 조합원이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을 입보하여 업무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신용거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연대보증인 없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 및 자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과 업무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입보면제거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및 비조합원 연대보증인 없이 자기출자지분액 범위 내에서 조합과 업무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2002년 7월 1일부터 신용거래를 전면 시행하려 하였으나, 입보거래에서 신용거래로의 전환에 따른 조합원의 지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합원이 신용거래, 입보거래 등 거래 방법을 선택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약정

가. 약정의 의의

조합원이 조합에 보증이나 용자를 신청함에 앞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 소정규정에 의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약하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계약을 말한다.

나. 약정의 종류

(1)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조합원이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금액을 한도로 조합으로부터 계속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 공사이행보증, 어음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리스보증, 비 조합원의 연대보증에 의하여 발급하는 보증, 담보보증은 반드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2)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약정에 의할 수 없는 때에 조합으로부터 각종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마다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다. 약정체결시 구비서류

(1) 입보거래

구 분	법 인	개 인
약정인	1. 약정서 (조합소정서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1. 약정서 (조합소정서식) 2. 개인인감증명서

연대보증인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	----------	----------

(2) 신용거래

구 分	법 인	개 인
약정인	1. 약정서 (조합소정서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1. 약정서 (조합소정서식) 2.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의 배 우자 등 개인 연 대보 증 인 입보시	1. 개인인감증명서 2. 호적등본(가족관계 확인용) ※ 조합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출 생략 3. 재산세 납부증명원(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간 종합토지세 및 건축물 재산 세 합산액이 5만원이상이어야 함)
--------------------------------------	---

(3) 비조합원 입보거래

○ 자연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종합토지세 또는 건
축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및 건축물 납세
영수증 사본(납부세액 25만원이상)

- 상기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 등본(보증신
청일 현재 15일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보증신청일 현재 15일 이내 발급분)

- 토지대장등본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보증신청일 현재 3월 이내 발
급분)

- 법인 인감증명서(보증신청일 현재 3월 이내 발
급분)

- 법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보증신청일 현재
15일 이내 발급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
사인의 전년도 감사보고서(최근2년간 재무제
표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감으로 원본 대조)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4) 약정체결시 구비서류 중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출일 현재 6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한다.

○ 보증거래약정과 융자거래약정을 동시에 체결하
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 조합과의 보증업무거래에 사용할 인감(1개 이내
의 사용인감)은 신고하여야 하며, 약정서에는 반
드시 원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라. 연대보증조건

(1) 입찰보증 및 입보면제거래에 의하는 보증채무
약정

○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

다주식보유자로 입보하여야 한다.(최다주식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 포함)

(2)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

- 조합원연대보증인 1인 이상과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 입보하여야 한다.(최다주식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 포함)
- 조합원연대보증인의 담보좌수는 약정인 약정좌수의 80/100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면 약정이 가능하다.

※ 예시 : 100좌 조합원의 연대보증인은 80좌 이상 조합원 1인 또는 40좌 조합원 2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지급보증 및 기타보증채무약정

- 조합원연대보증인 2인 이상과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 입보하여야 한다.(최다주식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 포함)
- 조합원연대보증인의 담보좌수는 약정인 약정좌수의 40/100 이상으로 하되, 연대보증인 담보좌수의 합계는 약정인 약정좌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 예시 : 100좌 조합원이 약정하는 경우는 40좌 조합원 1인과 110좌 조합원 1인 입보로 거래가 가능하다.

(4) 신용거래에 의한 보증채무약정

-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 입보하여야 한다.(최다주식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 포함)
- 약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입보한 경우에

는 그 대표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 · 자매 또는 최다주식보유자 중 1인 이상, 약정인의 최다주식보유자가 개인자격으로 입보한 경우에는 최다주식보유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 · 자매 또는 약정인의 대표자 중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입보하여 거래할 수 있다.

※ “개인연대보증인”的 자격 : 만20세 이상인 자에 한하며, 만60세 이상인 자는 연간종합토지세 및 건축물 재산세를 합산한 납세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신용거래를 하는 조합원은 다른 거래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거래용자를 받은 조합원이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용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의 조정 또는 신용평가등급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보증잔액이 보증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5) 비조합원 연대보증인에 의한 보증채무약정

- 연대보증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과 대표자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 비조합원(자연인 또는 법인) 1인 이상
 - 선급금보증은 다음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
 - 조합원 1인 이상과 자연인 1인 이상
 - 조합원 1인 이상과 법인 1인 이상
 - 자연인 1인 이상과 법인 1인 이상
 - 자연인 2인 이상 또는 법인 2인 이상

(6) 기타 유의사항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 대표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항상 공동대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며, 1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보증채권자와 약정연대보증인이 동일인일 경우 다른 조합원이 연대보증한 개별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타 조합원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 지분가 적용일 : 2004년 4월 1일부터

• 입보거래(50좌 조합원의 경우)

- 입찰보증 : 314,072,500원(50좌 × 897,350원 × 7배)
- 계약 및 하자보증 : 583,277,500원(50좌 × 897,350원 × 13배)
- 자급 및 기타보증 : 269,205,000원(50좌 × 897,350원 × 6배)
- 신용거래(50좌 조합원 BB등급의 경우)
- 입찰보증 : 314,072,500원(50좌 × 897,350원 × 7배)
- 계약 및 하자보증 : 246,771,250원(50좌 × 897,350원 × 5.5배)
- 자급 및 기타보증 : 89,735,000원(50좌 × 897,350원 × 2배)

5. 보증한도

가. 입보거래 및 신용거래 기본한도

구 분	입 보 거 래	신 용 거 래									
		가산배수 적용시	신 용 평 가 등 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합 계	26배	26배	20배	18.5배	17배	15.5배	14.5배	13.5배	12.5배	11.5배	10배
입찰보증 (소액보증)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일반보증 (입찰보증제외) (공사이행보증)	13배 (3배)	13배 -	9배 -	8배 -	7배 -	6배 -	5.5배 -	5배 -	4배 -	3배 -	2배 -
지급및기타보증	6배	6배	4배	3.5배	3배	2.5배	2배	1.5배	1.5배	1.5배	1배
(손해배상·리스보증) (어음·자재구입보증)	(각2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0.5배)	(각0.5배)	(각0.5배)

주 1) ()는 입찰보증 일반보증 또는 지급 및 기타 보증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신용거래는 신용평가등급 및 가산배수에 의하여, 가산배수는 신용평가를 받은 조합원이 융자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최고배수를 말한다.

나. 입보거래 및 신용거래 보증한도 계산방법

보증한도 계산방법 : 담보좌수 × 보증배수 × 지분가(897,350원)

다. 비조합원 입보거래

(1)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 출자지분액의 4배 이내

(2) 선급금보증 : 출자지분액의 2배 이내

◆ 조합원이 비조합원 연대보증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세워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의 1건당 발급 가능한 보증금액은 당해 조합원 출자지분액의 1배 이내로 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0좌를 초과하는 조합원은 200좌까지 보증

예시)

- 50좌 업체 : 44,867,500원(50좌 × 897,350원 × 1배)

- 200좌 업체 : 179,470,000원(200좌 × 897,350원 × 1배)

- 500좌 업체 : 179,470,000원(200좌 × 897,350원 × 1배)

◆ 보증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연대보증인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 1억원 발급시 : 자연인 2인 이상

- 선급금보증 1억원 발급시 : 자연인 3인 이상선급금보증은 기본입보 인원이 2인이며, 이 경우 5,000만원까지 보증가능. 보증금액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보증 인 추가)

라. 입보면제거래

(1) 입찰보증 : 출자지분액의 3배

(2) 입찰보증을 제외한 보증 : 출자지분액의 1배

* 융자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좌수에 대하여는 보증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마. 담보물의 거래한도

각 담보물의 종류 및 거래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 : 대용가격의 90%이내. 다만, 대용가

격이 공시되지 않은 상장 주식은 평균가격의 60%이내

※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증권매매의 위탁보증금으로서 현금대신 유가증권이 사용되는데, 이때 대용유가증권의 가격을 대용가격이라 합니다. 대용가격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주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기준시세에 거래 형성일수와 회전율을 근거로 하여 증권거래소가 월 단위로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2) 정기예금증서 : 액면금액의 90%이내(정기적금증서는 불입고의 90%이내)

(3) 부동산 :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감정 평가액의 70%이내

(4) 국·공채 : 대용가격의 90%이내

(5) 보증사채 : 액면금액의 90%이내

(6) 공사대 확정채권 : 양수확정채권의 80%이내

바. 신용거래 보증배수기산제도

신용평가를 받은 조합원이 기 이용중인 융자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 26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입찰보증을 제외한 일반보증은 13배를, 지급 및 기타보증은 6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융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 담보좌수에 좌당 거래 지분액을 곱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상환할 때마다 보증

가산배수	1좌당지분액	융자금 상환율	상환금액(원)
1배		15%	134,603
2배	897,350원	30%	269,205
3배	(2003년도말 결산지분액)	45%	403,808
4배		60%	538,410
5배		75%	673,013

배수 1배를 가산합니다. 융자금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융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거래지분액의 3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때마다 1배를 가산합니다.

〈담보제공율별 가산배수〉

가산배수	1좌당 지분액	담보제공율	1좌당 담보제공액(원)
1배		30%	269,205
2배		60%	538,410
3배		90%	807,615
4배	897,350원	120%	1,076,820
5배	(2003년도	150%	1,346,025
6배	말	180%	1,615,230
7배	결산지분액)	210%	1,884,435
8배		240%	2,153,640
9배		270%	2,422,845
10배		300%	2,692,050

※ 담보물의 종류

- 부동산(대지, 건물)
- 상장주식, 정기예·적금증서, 보증사채, 국·공채 등

(3) 현금예치시

- 현금을 담보로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금액의 3배 까지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4) 가산배수 배분 방법

- 가산배수 적용시 보증 및 등급별 안분은 아래표 참조.

(단위 : 배수)

등급별 안분배수	보증 구분	배 수					
		1	2	3	4	5	6
AAA	일반	0.69	1.38	2.08	2.77	3.46	4.00
	지급 기타	0.31	0.62	0.92	1.23	1.54	1.85
	일반	0.70	1.39	2.09	2.78	3.48	4.17
AA	지급 기타	0.30	0.61	0.91	1.22	1.52	1.83
	일반	0.70	1.40	2.10	2.80	3.50	4.20
	지급 기타	0.30	0.60	0.90	1.20	1.50	1.80
BBB	일반	0.71	1.41	2.12	2.82	3.53	4.24
	지급 기타	0.29	0.59	0.88	1.18	1.47	1.76
	일반	0.73	1.47	2.20	2.93	3.67	4.40
BB	지급 기타	0.27	0.53	0.80	1.07	1.33	1.60
	일반	0.77	1.54	2.31	3.08	3.85	4.62
	지급 기타	0.23	0.46	0.69	0.92	1.15	1.38
CCC	일반	0.73	1.45	2.18	2.91	3.64	4.36
	지급 기타	0.27	0.55	0.82	1.09	1.36	1.64
	일반	0.67	1.33	2.00	2.67	3.33	4.00
CC	지급 기타	0.33	0.67	1.00	1.33	1.67	2.00
	일반	0.67	1.33	2.00	2.67	3.33	4.00
	지급 기타	0.33	0.67	1.00	1.33	1.67	2.00

6. 보증의 제한

조합원이 업무거래중지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도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가. 정액입찰보증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될 때에 정액입찰보증 제한

- 발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낙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할 때까지
- 보증서를 발급한 당해연도에 3회 이상 또는 10 매 이상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일로부터 3 개월까지

나. 건설업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이 의견서를 발급 한 때

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또는 어음보증 을 받은 후 어음발행인이 지불정지 또는 부도 처분되거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등 신청 을 한 때

라. 동일공사에 대하여 자재구입보증, 선급금보증, 어음보증, 또는 시공자금융자금증 각각의 보증 또는 융자가 중복될 때

마.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조회 결과 N1, N2, N3 및 금융부실거래처로 분류된 때.(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이 발

주하는 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5/10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보증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계약보증. 다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동산등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보증 가능

○ 선급금보증. 다만, 부동산등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보증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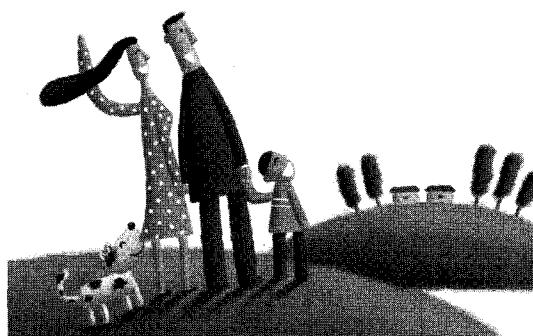
사. 비조합원 연대보증인이 사망, 파산,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업무거래정지 사유〉

- 출자증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 되었을 때
- 은행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건설산업기본법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당해 면허 또는 등록업종에 한하며 영업정지 전부터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서는 발급가능)

〈업무거래중지 사유〉

- 각종 보증금 청구를 받았을 때
-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조합이 지정한 배상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융자금이 연체된 때
- 공사대 양도 승인기관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승인조건 행사
- 제세공과금의 체납
-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였을 때
- 제거래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 부실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7. 보증수수료 요율

가. 입보거래

보증별	수수료요율	보증별	수수료요율
최저수수료	건당 3,000원	임시전력수용 예 납 보증	연 0.45%
입찰보증	건당 0.03%	선금금보증	연 0.6%
계약보증	연 0.4%	리스보증	연 1.0%
하자보수보증	연 0.3%	유보기성금 지급 보증	3천만원 이하 연 0.24%
손해배상보증	건당 0.8%		3천만원 초과 연 0.19%
인·허가보증	연 0.8%	어음보증	연 0.8%
자재구입보증	연 0.45%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연 0.45%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된 수수료의 50%를 할증(입찰보증, 소액보증은 제외)한다.

※ 각종 업무거래시 일반 및 재보증잔액(당해 발급분 포함)이 자기출자자분액 1배이내인 경우에는 건당 최저수수료(3,000원)를 징수한다.

신용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할인요율	30%	25%	20%	15%	10%	5%	0%	0%	0%

8. 보증의 해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해제한다.

나. 신용거래

보증별	수수료요율	보증별	수수료요율
최저수수료	건당 3,000원	임시전력수용 예 납 보증	연 0.9%
입찰보증	건당 0.03%	선금금보증	연 1.2%
계약보증	연 0.8%	리스보증	연 2.0%
하자보수보증	연 0.6%	유보기성금 지급 보증	3천만원 이하 연 0.48%
손해배상보증	건당 1.6%		3천만원 초과 연 0.38%
인·허가보증	연 1.6%	어음보증	연 1.6%
자재구입보증	연 0.9%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연 0.9%

※ 2004년 4월 1일 시행 소액보증입보·신용거래 구분 없음

최저수수료 : 12,000원, 계약보증 : 연 1.2%, 하자보수보증 : 연 0.9%

※ 신용거래의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외 최다주식보유자·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중 1인이상의

보증별	해제사유
입찰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때 • 입찰일 경과후 당해보증서가 반환된 때 • 조합이 당해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때 • 도급계약서 사본 제출등 계약체결사실의 통지가 있는 때 • 당해 조합원에게 낙찰되지 아니하였음을 조합이 확인한 때 • 당해 조합원이 불낙찰신고서를 제출한 때 • 정액입찰보증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230일이 경과한 때 또는 분실신고서를 제출한 때
계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확인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 •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하자보수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원을 제출한 때
선금금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금정산확인서를 제출한 때 •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유보기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확인서를 제출한 때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어음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해제통지서 또는 어음보증책임소멸확인서를 제출한 때

보증별	해제사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기간 종료후 30일이 경과된 때 보증채권자의 하도급대금(준공금)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때 하도급대금 영수증(전부지급)을 제출한 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지급확인서를 제출한 때
손해배상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확인서를 제출한 때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인·허가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에 따른 의무이행 완료증명서를 제출한 때
자재구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책임소멸일이 종료(보증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90일)된후 15일이 경과한 때 자재대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한 때
임시전력수 용예납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전력사용료 원납증명원이 있는 당해 임시전력영수증을 제출한 때
리스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보증기간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한 때 리스보증책임완료확인서 또는 규정손실금 잔액확인서를 제출한 때

9. 보증별 주요내용

가. 입찰보증

(1) 일반입찰보증

가) 보증금액

조합원이 보증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 국가계약법령상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나)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되, 보증

채권자가 입찰유의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다) 보증수수료=보증금액 × 요율

라)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2) 정액입찰보증

가) 내용

입찰보증서에 보증채권자, 입찰건명, 입찰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보증서를 조합이 발급하여 조합원이 입찰참가시 그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보증이다.

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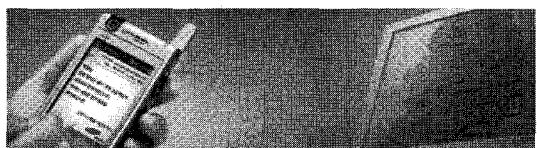
100만원권, 200만원권, 250만원권, 300만원권, 500만원권, 1천만원권, 3천만원권 및 5천만원권(8종)

다) 보증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라) 보증서의 사용기간 및 보증기간

조합원이 발급 받은 정액입찰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까지이다.



나. 계약보증

(1) 보증금액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 국가계약법령상 보증금율

- 시공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 시공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 계약금액의 20/100 이상

(2) 보증기간

계약일(변경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변경 또는 추가보증의 경우는 변경계약일을 말함)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기관이거나 입찰 유의서 등에 보증기간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3) 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는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의 일 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보증채권자가 국가법령의 적용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
산식 = 보증금액 ×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 또는 보증기한까지의 일수/365 × 요율

※ 보증수수료 할인 : 보증대상 공시가 계약서상 시공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수료에 20% 할인

※ 보증수수료 할증 :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보증을 하는 경우와 계약금액이 해당 공종의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30% 할증
예시)

• 시공능력 : 200,000,000원

- 시공연대보증인 : 없음
- 계약금액 : 200,000,000원
- 보증금액 : 40,000,000원(20%)
- 보증채권자 : 00건설(주)
- 계약일 : 2004년 4월 1일
- 계약이행기일(준공일) : 2004년 6월 30일
- 보증기간 : 2004년 4월 1일~2004년 6월 30일(91일)

△ 입보거래인 경우 수수료 : 51,850원(십원미만 절사)

- $40,000,000\text{원} \times 0.4\% \times 91\text{일}/365\text{일} = 39,890\text{원}$
 $39,890\text{원} \times 1.3 = 51,857\text{원}$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30% 할증)

△ 신용거래(개인연대보증인 있음. 신용등급 CCC) 경우 수수료 : 103,710원(십원 미만 절사)

- $40,000,000\text{원} \times 0.8\% \times 91\text{일}/365\text{일} = 79,780\text{원}$
 $79,780\text{원} \times 1.3 = 103,714\text{원}$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30% 할증)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 또는 공공단체이거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계약이행확인원 : 계약일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 청구한다.

※ 보증신청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거나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약정연대보증인의 보증서발급동의서 :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하거나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을 초과할 경우 청구한다.

※ 신용거래, 입보면제거래, 보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보증

(1) 보증금액

당해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2) 보증기간

- 도급공사 : 당해 계약목적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날 또는 보증채권자가 당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당해 계약문서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하도급공사 : 하자보수책임기간 개시일은 조합원이 신청하는 날로 하여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계약이행 완료 전에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경우에는 준공일 또는 하자보수책임기간개시일은 조합원이 신청하는 날로 하여 사전에 발급 받을 수 있다.

(3) 보증수수료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산식 = 보증금액 ×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일수/365 × 요율

※ 보증수수료 할증 :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을 초과하는 보증을 하는 경우 30% 할증

예시)

- 시공능력 : 200,000,000원
- 보증채권자 : 00건설(주)

• 계약금액 : 200,000,000원

• 보증금액 : 20,000,000원

• 보증기간 : 2003년 4월 1일~2005년 3월 31일(731일)

△ 입보거래인 경우 수수료 : 156,210원(십원미만 절사)

$$- 20,000,000 \text{ 원} \times 0.3\% \times 731 \text{ 일} / 365 \text{ 일} \\ = 120,164 \text{ 원}$$

$$- 120,164 \text{ 원} \times 1.3 = 156,213 \text{ 원} (\text{보증금액이 계약 금액의 } 100\text{분의 } 5 \text{ 를 초과하므로 } 30\% \text{ 할증})$$

△ 신용거래(개인연대보증인 있음, 신용등급 CCC) 인 경우 수수료 : 312,420원(십원미만 절사)

$$- 20,000,000 \text{ 원} \times 0.6\% \times 731 \text{ 일} / 365 \text{ 일} \\ = 240,328 \text{ 원}$$

$$- 240,328 \text{ 원} \times 1.3 = 312,426 \text{ 원} (\text{보증금액이 계약 금액의 } 100\text{분의 } 5 \text{ 를 초과하므로 } 30\% \text{ 할증})$$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 또는 공공단체이거나 계약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 약정연대보증인의 보증서발급동의서

- 하자보수책임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여 보증신청시(이 경우 발주자 또는 보증채권자의 무하자 증명원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신용거래, 입보 면제거래, 보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을 초과할 경우(신용거래, 입보면제거래, 보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

라. 선급금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하는 선급금액을 보증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당해 계약문서에 그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자 해당액을 포함한다.

(2)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당해공사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당해 계약 문서에 보증기한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 정부공사의 경우 선금지급요령에 의하여 계약이행기일에 60일을 가산한다.

(3) 보증수수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다.

산식 = 보증금액 ×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365 × 요율

예시)

- 보증채권자 : 00건설(주)
- 계약금액 : 200,000,000원
- 보증금액 : 60,000,000원(30%)
- 계약일 : 2003년 4월 1일
- 계약이행기일 : 2003년 6월 30일
- 보증서발급일 : 2003년 4월 9일
- 보증기간 : 2003년 4월 9일 ~ 2003년 6월 30일(83일)

△ 입보거래인 경우 수수료 : 81,860원(십원미만 절사)

- 60,000,000원 × 0.6% × 83일/365일 = 81,863원

△ 신용거래(개인연대보증인 있음, 신용등급 CCC)
인 경우 수수료 : 163,720원(십원미만 절사)
- 60,000,000원 × 1.2% × 83일/365일 = 163,726원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인 경우 계약일반 조건이나 특수조건 등에 관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 ※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은행도일람출급 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 담보제공증서

마. 유보기성금지급보증

(1) 보증금액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성금증 계약조건에 따라 유보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통상 기성금액의 10%)

(2)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한다.

(3) 보증수수료

보증서발급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다

산식 = 보증금액 × 보증서발급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 일수/365 × 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 유보기성금지급보증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일반 조건이나 특수 조건 등의 서류사본(당해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대조)

바 . 어음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의 기성금 또는 준공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받는데 대하여 그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약정이자 포함)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2)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할인어음의 만기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증수수료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다.

$$\text{산식} = \frac{\text{보증금액} \times \text{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text{일수}/365 \times \text{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도급계약서 사본
-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사본
- 발주자(수급인)의 어음발행확인서 또는 어음발행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사본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 금융거래상황확인서(우량업체 및 적격업체)

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로 한다.

-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text{공사기간(월수)}} \times 4$$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text{공사기간(월수)}}$$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 (월수)} \times 2$$

(2) 보증기간

계약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당해 계약문서에 대금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기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3) 보증수수료

계약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다.

산식 = 보증금액 × 계약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
/ 365 × 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도급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 하도급대금지급조건등에 대한 서류의 사본
- 은행도일람출급 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부 약속
어음
- 담보제공증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아. 손해배상보증

(1) 보증금액

당해 공사의 입찰유의서 등에 정하여진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없는 때에는 계약금
액의 7/1000로 한다.

(2) 보증기간

당해공사의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
거나 당해 공사의 입찰유의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
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3) 보증수수료=보증금액×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도급계약서사본
- ※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계약금액

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계약이행확인원(계약일을 경과하여 보증을 신청
한 때)

※ 보증신청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자. 인·허가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원상회복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2) 보증기간

인·허가기간개시일(그 개시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
령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까지(인·허가기
간이 불분명한 때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로 한다.

(3) 보증수수료

인·허가기간개시일(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
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다.

산식 = 보증금액 × 인·허가기간개시일(보증서발급
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365 × 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이 명시된 공문 등 사본
- 은행도일람출급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부 약속
어음
- 담보제공증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차. 자재구입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 대금지급의 이행담보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되, 보증대상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2) 보증기간

자재공급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만료일에 9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
- 보증기간개시일이 보증서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발급일부터

(3) 보증수수료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다.

$$\text{산식} = \text{보증금액} \times \text{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 / 365 \times \text{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당해 자재공급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 은행도일람출급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부 약속 어음
- 담보제공증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카. 임시전력수용 예납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

고자 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예납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2) 보증기간

임시전력수용계약개시일(그 개시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보증서발급일)부터 그 수용계약 종료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수용계약기간이 불분명한 때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으로 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3) 보증수수료

수용계약기간개시일 또는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 기한까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산식} = \text{보증금액} \times \text{수용계약기간개시일 또는 보증서 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 / 365 \times \text{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심사에 필요한 서류

타. 리스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이용함에 있어 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취득원가의 50/100 이내로 한다. 다만, 취득원가의 50%를 초과하는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이 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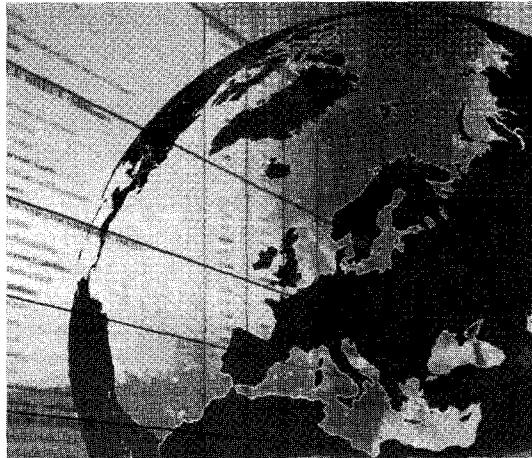
(2) 보증기간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보증서발급일 또는 물건수령증서(차수증)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3) 보증수수료

보증서발급일 또는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산식 = 보증금액 × 보증서 발급일 또는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일수 /365 × 요율



(4) 보증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하여 보증한다.

※ 리스물건을 대여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5)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리스계약서 사본
- 리스물건수령증서 사본

※ 미 발급인 경우에는 추후 발급시 제출하면 된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 미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시 제출하고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징구하지 않는다.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 은행도일람출급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 담보제공증서

〈참고사항〉

리스의 개념 : 리스라 함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합니다.

규정손실금 : 리스이용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시설대여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시설대여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금으로 통상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지불에 의하여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감하게 됩니다. 대여시설의 상각부분, 이자 보험료, 세금, 수수료 등 대여물건의 소유에 따른 부담비용(대여물건의 소유자는 시설대여 회사임)과 시설대여회사의 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규정손실금이란 배상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있어서의 당해시설의 잔존가액 또는 시설대여회사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역	담당	차장	지점장
-----	----	----	-----

조합원 No 1234

입찰(일반·정액) 보증신청서

귀 조합과 년 월 일 체결한 억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입찰(원·하), 정액입찰] 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 분	신 청 내 용						
일 반 입 찰	※ 보증서 No	보 증 금 액	₩ 10,000,000 Ⓛ				
		입찰 건 명	000정시 신축공사용 기계설비공사 Ⓛ				
		보증 채권자	00시 경력관 Ⓛ	발 주 자	※ 하도급만기재		
		입찰 기 일	2002년 3월 9일 Ⓛ	보증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부터 일까지		
보 증 서 No	보 증 금 액	₩					
	입찰 건 명						
	보증 채권자				발 주 자	※ 하도급만기재	
	입찰 기 일	년 월 일	보 증 기 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부터 일까지			
정 액 입 찰	※ 보증서 No	권 종	수 량	합 계	※ 한도 가능여부	※ 수수료	※ 총 합 계
	~	만원	건	만원	가·부 Ⓛ	₩	건 수
	~	만원	건	만원	가·부 Ⓛ	₩	건
	~	만원	건	만원	가·부 Ⓛ	₩	보증금액 ₩
	~	만원	건	만원	가·부 Ⓛ	₩	수수료 ₩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00

(회)

인감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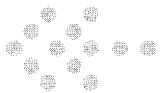
상 호 : 그네건설(주)

대 표 자 : 이 용 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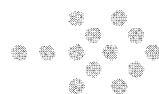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

구 분	※ 심 사 란			※ 해 제 란			
	보증서 No	한도 가능여부	수 수 료	년 월 일	보증서 No	해 제 금 액	
일 반 입 찰	가·부 Ⓛ	₩				₩	
	가·부 Ⓛ	₩				₩	
	가·부 Ⓛ	₩				₩	
	~	건			~	건	
※ 정액 입찰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총 합 계		건



입찰보증신청서 작성방법

1. ※표란은 당 조합에서 기재합니다.
2. ②부분의 보증금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③, ④부분은 입찰공고 내용에 맞게 해당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⑤부분에 조합원사의 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시고 원인감 또는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로 일반, 정액입찰보증서 개별 및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일반입찰은 건별로 기재하여 주시고 정액입찰보증은 권종에 1,000만원, 수량에 10건 등과 같이 종류별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정액입찰보증의 액면종류 : 100만원권, 200만원권, 250만원권, 300만원권, 500만원권, 1천만원권, 3천만원권, 5천만원권.
 - 정액입찰보증은 발급일부터 180일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내 미 사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신청서 작성방법

1. ※표란은 당 조합에서 기재합니다
2. ②부분은 보증금액(=①×③%)을, ①부분은 보증금율을, ④부분은 계약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③, ④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⑤부분은 공시명을, ⑥부분은 계약서상의 (갑)을 기재하시고 하도급일 경우에는 ⑦부분에 발주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⑧, ⑨부분에 해당날짜를, ⑩부분에는 준공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 ⑪부분은 보증채권자가 민간일 경우 ⑫에서부터 ⑬까지 기간을,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거나 계약서 등에 보증기간에 따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은 ⑭기간에 60일을 더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6. ⑮부분에 조합원사의 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시고, 원인감 또는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감사역

당	당	차	장	지점장

조합원 No 1234

계약(공사이행, 하자보수)보증신청서

귀 조합과 년 월 일 체결한 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원 : 계약, 공사이행, 하자보수 하 : 계약, 공사이행,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 분	신 청 내 용				해 재 일	
계약 보증서 ※№	증명	계약	₩ 10,000,000 Ⓛ	서 공 등	100,000천원	
	공사이행	₩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	10 Ⓛ	%	
	계약 금 액	₩ 100,000,000 Ⓛ	예정가격에 대한 비율	%		
	예 정 가 격	₩	계약·공사이행 보증만 기재			
	계약 건 명	000경사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 Ⓛ				
	보 증 채 권 자	00종합건설(주) Ⓛ	발 주 자	000시청 Ⓛ	※하도급만기재	
낙 칠 일	2002년 4월 1일 Ⓛ	계 약 일	2002년 4월 2일 Ⓛ			
계약 이 행 기 일 (준 공 일)	2002년 6월 30일 Ⓛ	보증기간	2002년 4월 2일부터 Ⓛ 2002년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 보증서 ※№	보 증 금 액	₩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	%		
	계약 금 액	₩				
	계약 건 명					
	보 증 채 권 자	발 주 자		※하도급만기재		
	계약 일	년 월 일	준 공 일	년 월 일		
	하 자 보 수 책 임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00

상 호 : 그네건설(주)

ⓑ)

대 표 자 : 이 용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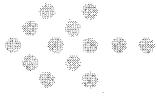
(인)

인감
대조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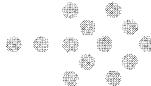
신청인	구 분	해당좌수	실거래한도액	보증잔액	여유한도액	
	총 거 래 한 도					
	계약·공사이행보증 한도					
	비조합원 입보시거래한도					
구 분	※ 심 사 란		※ 해 제 단			
	한도가능여부	보증일수	수수료	보증서No.	해제금액	
	계약	가 · 부	₩		₩	₩
	공사이행	가 · 부	₩		₩	₩
하 자	가 · 부	₩		₩	₩	

감사역	담당	차장	지점장		
조합원 No.					
<u>계약(공사이행, 하자보수)보증신청서</u>					
귀 조합과 년 월 일 체결한 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원 : 계약, 공 사이행, 하자보수 하 : 계약, 공사이행,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 분	신 청 내 용			해 제 일	
계약 보증서 ※ No	보증금액	계 약 ₩	시 공 능력	천원	
		공사이행 ₩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	%	
		계약 금 액 ₩	예정가격에 대한 비율	%	
		예 정 가 격 ₩	계약·공사이행 보증만 기재		
		계약 건 명			
		보 증 채 권 자	발 주 자	※ 하도급만기재	
공사이행 보증서 ※ No	낙 칠 일	년 월 일	계약 일	년 월 일	
	계약 이 행 기 일 (준 공 일)	년 월 일	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 증 금 액	₩ 2,000,000 Ⓛ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	⊕ 2%	
	계약 금 액	₩ 100,000,000 Ⓛ			
	계약 건 명	000정사 신축공사증 기계설비공사 Ⓛ			
	보 증 채 권 자	00종합건설(주) Ⓛ	발주자	000시 정 Ⓛ ※ 하도급만기재	
계약 일	2001년 4월 1일 Ⓛ	준공일	2002년 3월 30일 Ⓛ		
하 자 보 수 책 임 기 간	2002년 4월 2일부터 Ⓛ 2004년 4월 1일까지	보증 기간	2002년 4월 2일부터 Ⓛ 2004년 4월 1일까지		
년 월 일				인감대 조	
신청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00					
상 호 : 그네건설(주) Ⓛ					
대 표 자 : 이 용 풍 Ⓛ (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규종					
신청인	구 분	해당좌수	실거래한도액	보증잔액	여유한도액
	총 거래 한도				
	계약·공사이행보증 한도				
	비조합원 입보시거래한도				
구 분	※ 심 사 란		※ 해 제 란		
	한도가능여부	보증일수	수수료	보증서No.	해제금액
	계약 가 · 부		₩		₩
	공사이행 가 · 부		₩		₩
하 자 가 · 부		₩		₩	



하자보수보증신청서 작성방법

1. ※표란은 당 조합에서 기재합니다.
2. ②부분은 보증금액(=①×④%)을, ①부분은 보증금율을, ③부분은 계약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⑦, ⑨, ⑩는 아래의
아수자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⑤부분은 공사명을, ⑥부분은 계약서상의 (갑)을 적으시고, 하도급일 경우에는 ⑧부분에 발주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⑪부분은 계약일을, ⑫부분은 실제준공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 ⑬부분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 종료일까지의 날짜를 기재 주십시오.
6. ⑭부분은 민간공사의 경우 ⑯와 동일하게 적어주시고,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거나 계약서 등에 보증기간에 따로 정
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은 ⑮기간에 60일을 더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7. ⑮부분에 조합원사의 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시고, 원인감 또는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선급금보증신청서 작성방법

1. ※표란은 당 조합에서 기재합니다.
2. ②부분은 보증금액(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거나 계약서 등에 약정이자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④
+ ⑤를 기재)을, ①부분은 계약서 상 선급금액을, ⑦ 및 ⑧부분에는 선급금율 및 약정이율을 기재하시고, ⑨ 및 ⑩부분
은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거나 계약서 등에 약정이자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⑪, ⑫,
⑬, ⑭, ⑮, ⑯는 아래의 아수자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⑤부분은 공사명을, ⑥부분은 계약서상의 (갑)을, 하도급일 경우에는 ⑧부분에 발주자를 기재하시고, 보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⑪ 및 ⑫부분에는 계약서상 계약일 및 준공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 ⑬부분에는 민간공사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⑮기간까지를,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거나 계약서 등에 보증기간에 따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은 ⑮기간에 60일을 더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6. ⑮부분에 조합원사의 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시고, 원인감 또는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감사역		담당	차장	지점장				
보증서 No. <u> </u> 호 조합원 No. <u>1234</u> 선금보증신청서								
귀 조합과 년 월 일 제결한 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 하) 선금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u>₩ 30,000,000 Ⓛ</u>							
선금금액	<u>₩ 30,000,000 Ⓛ</u> (도급금액의 30% Ⓛ)							
약정이자	<u>₩ Ⓛ</u> (0.1을 연리 % Ⓛ)							
계약금액	<u>₩ 100,000,000 Ⓛ</u>							
계약건명	<u>000정사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 Ⓛ</u>							
보증채권자	<u>000총책건설(주) Ⓛ</u>	발주자	<u>000시청 Ⓛ *하도급안기재</u>					
계약일	<u>2002년 4월 2일</u>	계약이행기일	<u>2002년 6월 30일 Ⓛ</u>	보증기간 <u>2002년 4월 6일부터 Ⓛ 2002년 6월 30일까지</u>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00								
상 호 : 그네건설(주) Ⓛ								
대 표 자 : 이 용 흥 Ⓛ (인)								
인감대조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귀종								
※성 사 관 사 행	구 분 조합원 No.	상 호			보증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기타 관리사항	확인자 (수화자)		
		신청인						
		연보증 대인						
용자현 황 한도심 사	구 분 신청인	용 자 금	해당 좌수	실거래한도액	보증잔액	여유한도액	수 수 료 계산일수	수 수 료 계산일수
		용자금	좌 Ⓛ	₩ Ⓛ	₩ Ⓛ	₩ Ⓛ		
		총지급 기타	좌 Ⓛ	₩ Ⓛ	₩ Ⓛ	₩ Ⓛ		
비조합원	좌 Ⓛ	₩ Ⓛ	₩ Ⓛ	₩ Ⓛ				
※해 제 란	정 산		준공금지불일		단축기간 <u>20</u> (<u>일간</u>) <u>20</u>	환불수수료 <u>₩ Ⓛ</u>		
	선금금 [] 일 원제	20						

- (주) 1. ※ 표란은 당 조합에서 기재합니다.
 2. 보증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상의 인감은 조합에 신고한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5. 구비서류 : ①은행노밀증출금약속어음 또는 공정승서부약속어음 ②담보제공증서 ③도급계약서 사본(원본 제시) ④납세증명서(유예포함)